



국제공인교정기관 일부 인정항목 폐지

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(국가교정제도의 확립) 및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29조(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)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국제공인교정기관 일부 항목 폐지를 공고합니다.

2011.12.9

한 국 인 정 기 구 장

인정 번호	기 관 명	대표자	법인등록 번호	소 재 지	사유 및 폐지분야
			사업자 등록번호		
KC05-197	씨엠에스센터 (주)	이은주	170111-0287369 503-81-68207	법인주소 :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1118 사업장소재지 : (위와 같음)	- 자진반납 - 폐지분야(1개 항목) 고무, 플라스틱 및 기타 경도시험기(21006)

부칙 :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. 끝.